

제3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2. 6. 28.(목) 10: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이계철 위 원 장

홍성규 부위원장

김충식 상임위원

신용섭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① 성원보고

② 국민의례

③ 개회선언

④ 회의공개여부 결정

⑤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⑥ 의결사항

가.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계획에 관한 건

- (2012-36-135)

- 백기훈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46조제3항에 의한 KBS 이사 추천,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방문진 이사·감사 임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제2항, 제3항 및 제13조제2항에 의한 EBS 사장·감사·이사 임명을 위한 선임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내용

① 선임대상 임원

구분	임원	임기 만료일	인원	임기	법률상 임명절차	비고
KBS	이사	'12.08.31	11인	3년	방통위 추천 → 대통령 임명	비상임
방문진	이사	'12.08.08	9인	3년	방통위 임명	비상임 (이사장 상임)
	감사	'12.08.08	1인	3년	방통위 임명	비상임
EBS	사장	'12.10.14	1인	3년	방통위원장 임명(방통위 동의)	상임
	이사	'12.09.14	9인	3년	방통위 임명	비상임
	감사	'12.10.14	1인	3년	방통위 임명	상임

② 선임 방안

- (KBS·방문진 이사회 이사)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천·타천으로 공개모집 (KBS·방문진 이사는 중복 응모 불가),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상임위원간 협의를 통해 후보자 선정, 결격사유 확인,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 (EBS 사장·이사)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천·타천으로 공개모집,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상임위원 간 협의를 통해 후보자 선정, 결격사유 확인,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EBS사장 임명동의 및 EBS 이사 임명
- (방문진·EBS 감사) 공모없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상임위원 간 협의를 거친 후 의결을 통해 임명

나.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 (2012-36-136)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 OBS경인방송을 서울지역으로 재송신하고자 승인신청한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함

○ 주요 내용(승인내용)

신청 주체 (위성방송사업자)	재송신 대상	재송신 지역	재송신 유형
KT SkyLife	OBS경인방송(HDTV)	서울특별시 전역	수신제한시스템(CAS)를 이용한 동시재송신

※ 유효기간 : 의결일로부터 3년간

다.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 (2012-36-137)

- 라봉하 융합정책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와 연구 개발사업의 신규 인력 채용 확대 등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내용

- ① (연구비 비목 단순화) 연구자의 행정 부담 경감, 연구비의 유연성 있는 활용 지원
 - 4개 항목(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 2개 항목(직접비, 간접비)
- ② (중견 기업 조향 신설) 일반기업, 중소기업으로만 나누어 관리하던 매칭 기준, 기술료 등을 중견기업을 추가하여 관리 기준 마련
 - 매칭비율 : 일반기업(50%), 중소기업(25%) ⇒ 대기업(50%), 중견기업(40%), 중소기업(25%)
 - 기술료 : 일반기업(40%), 중소기업(20%) ⇒ 대기업(40%), 중견기업(30%), 중소기업(10%)
- ③ (R&D 책임성 강화) 과제중단, 연구비 부정 사용, 연구 윤리 위반 등에 제재 기준 및 연구비 환수 기준 구체화
 -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보고서 미제출 등 과제 관리 해태, 연구비 유용에는 사업비를 환수하는 등 위반행위 유형과 제재 기준을 구체화
- ④ (중소 기업의 연구개발 참여 확대 지원) 신규 인력 채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로써, 신규 인력을 다수 채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인력의 인건비도 30%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

○ 향후계획

- 개정안 공포(관보게재) : '12. 7월 초
- 부속규정 및 수행관리지침(훈령) 개정 : '12. 7월

7] 보고사항

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발신번호 변작방지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

- 전화번호 조작 사기행위를 사전에 뿌리 뽑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방안을 담은 「발신번호 변작방지 가이드라인」을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 주요내용

①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

- 국내로 걸려오는 해외 발신번호 앞에 국제전화 식별번호(00X, 00XXX 등)를 넣어야 할 의무를 2012.7.1일부터는 주요 통신사업자에서 모든 통신사업자로 확대

② 국내 공공기관 사칭 해외발신 전화 호 차단

- 기간통신사업자는 해외 발신 국제전화 중 수사기관, 우체국 등 국내 공공기관 전화번호로 변작된 해외 발신 전화 호에 대해 2013.1.1일부터 차단조치 실시

·별정통신사업자의 전화 호에 대해서도 기간통신사업자가 대신 차단

③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금지

- 방통위가 정한 정당한 경우 외에 통신사업자의 발신번호 변경금지

·번호변경을 제공하는 경우 통신사업자는 이용자 본인확인 및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사업자가 직접 전화번호를 변경해야 함

④ 발신번호변작대응센터 운영

-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불법스팸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내에 「발신번호변작대응센터」 신설

·차단할 전화번호 DB 관리, 유관기관간 신고정보 공유시스템 구축·관리, 통신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점검 지원 등 업무 수행

○ 향후 계획

- 2012. 6월 ~ : 「발신번호변작대응센터」 운영 예산 확보 추진
- 2012. 7월 ~ :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2012. 8월 ~ :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
- 2013. 1월 : 국내 공공기관 사칭 해외발신 전화 호 차단 시행

8] 기 타

가.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2. 7. 5(목).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1:05)